

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정기-3차)
(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관리동 신축)



구 미 시

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정기-3차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5. 11. .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내수 및 수출입 물류의 원활한 운송을 통한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도모
-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소를 통해 시민 정주여건 개선 및 화물운수종사자의 편의 증진 기여
- 화물자동차의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, 주거지 인근 대형 화물자동차의 주거환경 침해 방지를 위한 해결책 필요

2. 주요내용

【취득재산】

- 위치 : 구미시 선산읍 죽장리 1093번지 일원
- 대상 : 연면적 A = 500m²(건물 1동, 지상 2층)
- 기준가격 : 13,000백만원(건물 1동 및 차고지 조성)
 - 관리동 신축 1,600백만원, 토목 공사 및 시설부대비 등 11,400백만원
- 총사업비 : 19,800백만원(도비(전환) 9,100백만원, 시비 10,700백만원)
 - 토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비 6,800백만원
 - 관리동 신축 1,600백만원
 - 토목공사 등 10,600백만원, 시설부대비 800백만원
- 사업기간 : 2023 ~ 2027년
- 주요시설 : 주차면수 388대(화물 280, 승용 108), 관리동 조성

○ 추진현황

- 입지분석 및 타당성 조사 용역 : '23. 10. ~ '24. 12.
-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: '25. 4. ~ '25. 12.
※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 공람·공고 ('25. 9. 1. ~ '25. 9. 19.)
- 지방재정 도 투자심사 : '25. 4. ~ 6.
- 2026년도 전환사업 예산 신청 : '25. 4. ~ 6.
- 기본조사 및 감정평가 : '25. 10. ~ 12.

○ 향후추진계획

- 토지 소유권 이전 및 보상 : '26. 1. ~ 3.
- 실시설계 용역 : '26. 3. ~ 7.
- 공사 착공 및 준공 : '26. 8. ~ '27. 8.

3. 근거법령

-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 제9호 및 제45조
-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, 같은법 시행령 제38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의2, 같은법 시행령 제7조
-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12조

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정기-3차)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², 백만원)

구 분		건수	수량	금액
취득	계	1건	500	13,000
	3.기타 취득	토지 건물 기타	1건	5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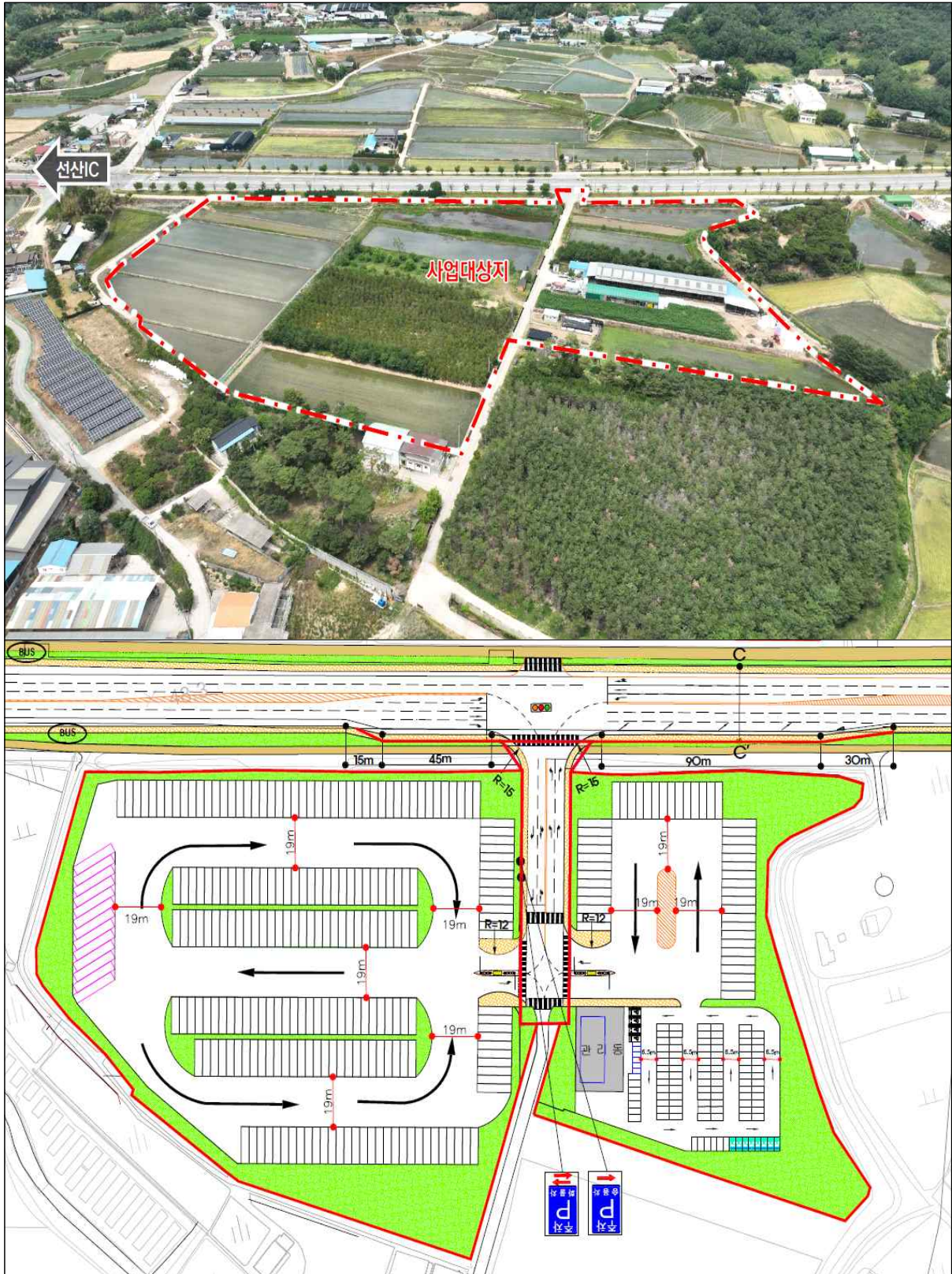
취득 재산목록(총괄)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², 백만원)

구분	재 산 의 표 시			추정가액	취득 시기	사 유	재산 소유자	비고
	재산 구분	소 재 지	수 량(m ²)					
총계			500	13,000				
취득	건물	선산읍 죽장리 1093 일원	500	13,000	2027년	화물 공영차고지 조성 및 관리동 신축	구미시	

위치도



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정기-3차) 비용추계서 (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관리동 신축)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- 「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」 제45조에 의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관리동 신축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건설공사비 : 12,200백만원
- 시설부대비 : 800백만원
-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비 : 6,800백만원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백만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 (2026년)	2차년도 (2027년)	3차년도 (2028년)	4차년도 (2029년)	합계
세출	○ 공사비	1,500	10,700	-	-	12,200
	○ 시설부대비	500	300	-	-	800
	○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비	6,800	-	-	-	6,800
합계		8,800	11,000	-	-	19,800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:백만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 (2026년)	2차년도 (2027년)	3차년도 (2028년)	4차년도 (2029년)	합계
국비		-	-	-	-	-
도비		1,400	7,700	-	-	9,100
시비		7,400	3,300	-	-	10,700
민간		-	-	-	-	-
기타		-	-	-	-	-
합계		8,800	11,000	-	-	19,800

5. 부대의견

- 본 추계결과는 사정에 따라 재정수반액이 변경될 수 있음

6. 작성자

-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 이준하(054-480-2912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금 액	세 부 산 출 내 역	비 고
총 계	19,800		
공사비	소계	12,200	
	건축공사	1,600	건축공사 1식 = 1,600백만원 (연면적 500m ²)
	토목공사	9,300	토목공사 1식 = 9,300백만원 (부지면적 47,014m ²)
	기타공사	1,300	기타공사 1식 = 1,300백만원
시설부대비	800	시설부대비 1식 = 800백만원	
매입비	6,800	토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 1식 = 6,800백만원	지방채 발행 동의안 가결 (45억원)

관계법령

□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9. "공영차고지"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한 것을 말한다.

가.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

나.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
다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

라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

제45조(공영차고지의 설치) ①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영차고지(公營車庫地)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(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)할 수 있다.

1. 사업자단체

2. 운송사업자

3. 운송가맹사업자

4.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

② 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설치한 자(이하 "차고지설치자"라 한

다)는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려면 공영차고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계획(이하 “설치·운영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시·도지사를 제외한 차고지설치자가 설치·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·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④ 차고지설치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치·운영계획을 수립·변경하거나 인가·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고시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.

⑤ 시·도지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·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시·도지사를 제외한 차고지설치자의 설치·운영계획을 인가하는 경우에 그에 관련된 각종 인가·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46조의4를 준용한다.

⑥ 차고지설치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치·운영계획을 수립·변경하는 경우 공영차고지의 설치·변경이 학생의 통학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제10조의2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

한다.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5조에 따른다.

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
제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

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
1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
2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

□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

제12조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.

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
가. 취득의 경우: 10억원
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
2.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
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1천제곱미터
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2천제곱미터

소 관 부 서		회 계 과 (대중교통과)
입 안 자	과 장	임 응 건 (임 춘 욱)
	팀 장	정 세 황 (김 영 찬)
	담 당 자	정 민 주 (480-5073) (이 준 하) (480-2912)